

의안번호	제 311 호
의결년월일	1995. 12. 7. (제 40 회)

의 결 사 항	원안 가결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발 의 자	이 상 근의원 의 3 인
발의년월일	1995. 11. 21.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//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5. 11. 2/.

발의자 : 고성군의회 의원 3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1995. 7. 1 대통령령 제14703호)으로 중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보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2조제1항2호중 "일비"를 각각 "회의수당"으로 한다(안 제2조제1항2호)

나. 제4조제1항1호, 2호중 "일비"를 각각 "회의수당"으로 한다 (안 제4조제1항1호, 동2호)

3. 관련법규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대통령령 제14703호 1995. 7. 1)

4.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2호중 "일비"라를 "회의수당"이라 토 하며, "일비를"을 "회의수당을" 토 한다.

제4조제1항1호중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하고, 동제2호중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정의) ① 생략</p> <p>1. 생략</p> <p>2. "<u>일비</u>"라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<u>일비를</u> 말한다.</p> <p>3. 생략</p> 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 생략</p> <p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<u>일비</u>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<u>일비</u>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	<p>제2조 (정의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1. 현행과 동일</p> <p>2. "<u>회의수당</u>"이라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<u>회의수당을</u> 말한다.</p> <p>3. 현행과 동일</p> 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<u>회의수당</u>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<u>회의수당</u>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